

| | |
|-----------|----------------------------|
| 의안번호 | 제442호 |
| 의결 연월일 | 2012년 12월 20일 (제 316 회) |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발의자 | 김봉희 의원의 6명 |
| 발의연월일 | 2012년 12월 4일 |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봉회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442 |
|----------|-----|

발의연월일 : 2012년 12월 4일

발 의 자 : 김봉회, 김희수, 심기보,
김형근, 임 현, 정지숙,
김종필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2012.9.22)에 따라 수수료를 동일하게 개정하고,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가 확대됨에 따라 새로 규정된 수수료를 반영하기 위함.

또한 민원인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하고, 수수료 면제 조항에 ‘독립유공자와 유족’, ‘참전군인’ 등을 추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청사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 민원인의 이익을 위해 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안 제4조)

-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불반환 → 수수료의 반환

나. 수수료 면제 대상 추가신설(안 제5조제1항제5호, 제6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대통령령)과 동일하게 수수료 개정 (별표2)

- 골프장업,스키장업 사업계획 승인 : 1건 200,000원 → 1건 100,000원
- 골프장업,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 1건 60,000원 → 1건 30,000원
- 골프장업,스키장업 등록신청 : 1건 100,000원 → 1건 50,000원
- 골프장업,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 1건 40,000원 → 1건 20,000원
-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신청 : 1건 100,000원 → 1건 50,000원
-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 1건 40,000원 → 1건 20,000원
-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등록신청 : 1건 60,000원 → 1건 30,000원
-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 : 1건 20,000원 → 1건 10,000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24111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행정국 세정과와 협의하였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제1항제5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청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별표 2]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2조 관련)

(단위 : 원)

| 구 분 | 기준 | 금 액 | 비 고 |
|-------------------------------------|----|--------|--|
| 1. 증명 | | | |
| 가. 회계에 관한 증명 | | | |
|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 1통 | 300 | |
| 2) 하자보증금 납부 증명 | 1통 | 300 | |
| 3)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 | 1통 | 300 | |
| 4) 실적증명 (공사, 물품, 용역) | 1통 | 300 | |
| 나. 기타 제증명 | | | |
| 1) 화재증명원 발급 신청 | 1건 | 800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규정 (대통령령),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52조 |
| 2) 원자재소요량 증명 | | | |
| 가) 가소요량 | 1통 | 3,500 | |
| 나) 확정소요량 | 1통 | 1,200 | |
| 3) 기타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 1통 | 300 | |
|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시설확인 등 | | | |
| 가. 일반행정관계 | | | |
| 1)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 | | | |
| 가) 신규 | 1건 | 5,000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 (대통령령) |
| 나) 갱신 또는 기간연장 | 1건 | 3,000 | |
| 2) 인·허가, 등록 지정 등의 대장 열람 | 1건 | 350 | |
| 3) 기타 각종 인가, 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 | 1건 | 100 | |
| 나.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 | | |
| 1)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신고 및 변경신청 | 1건 | 1,000 | 전기사업법 제62조 |
| 2) 석유판매업(일반·용제대리점) 등록신청 | 1건 | 30,000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41조,규칙제12조 |
| 3)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 | 1건 | 20,000 | |
| 4) 승강기보수업 등록신청 | 1건 | 50,000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1조 |
| 5) 승강기보수업 변경등록 신청 | 1건 | 20,000 | |
| 6)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 1건 | 4,000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 (대통령령) |
| 7) 전기공사업의 등록신청 | 1건 | 40,000 | 전기공사업법 |

(단위 : 원)

| 구 분 | 기준 | 금 액 | 비 고 |
|---|--|--|--|
| 8)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 1건 | 30,000 | |
| 9) 전기공사업의 승계(양수·상속·합병) 신고 가) 양도·양수 또는 법인 합병 신고 나) 상속 신고 | 1건 1건 | 30,000 5,000 | 제4조, 제7조 |
| 10) 전기공사업의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가) 승계(양수·상속·합병) 신고 나)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의 부족에 따른 재교부 ※ (8), (9)는 공사업자단체가 현금으로 징수 | 1건 1건 | 5,000 5,000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대통령령)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 |
| 11)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업등록·양도·양수·합병 신청 등 가) 종합 설계업 등록 신청 나) 종합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다) 전문1종 설계업 등록 신청 라) 전문1종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마) 전문2종 설계업 등록 신청 바) 전문2종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사) 종합 감리업 등록 신청 아) 종합 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자) 전문 감리업 등록 신청 차) 전문 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 50,000 45,000 30,000 25,000 20,000 15,000 50,000 45,000 30,000 25,000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
| 12)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업 가) 변경등록(상호·소재지·대표자·기술인력) 신고 나) 등록증 재발급 | 1건 1건 | 5,000 5,000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대통령령) |
| 다. 건설관계 | | | |
| 1) 건설기계저당권 설정등록 및 이전등록 신청 | 1건 | 1,200 |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6조 |
| 2) 건설기계저당권 변경 또는 말소 신청 | 1건 | 1,200 | |
| 라. 보건사회위생관계 | | | |
| 1)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교부신청 | 1매 | 50 |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20조 |
| 2) 종합병원 개설허가 | 1건 | 100,000 | |
|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허가 | 1건 | 100,000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대통령령) |
| 4) 종합병원 개설 변경허가 | 1건 | 40,000 | |
| 5)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 변경허가 | 1건 | 40,000 | |
| 마. 문화 공보관계 | | | |
| 1)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신고 | 1건 | 20,000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1조 |
| 2)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변경신고 | 1건 | 10,000 | |
| 바. 체육시설업 관계 | | | |

(단위 : 원)

| 구 분 | 기준 | 금 액 | 비 고 |
|------------------------------------|----|---------|--|
| 1) 골프장, 스키장업 사업계획 승인 | 1건 | 100,000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대통령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9조 |
| 2) 골프장,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 1건 | 30,000 | |
| 3) 골프장, 스키장업 등록신청 | 1건 | 50,000 | |
| 4) 골프장,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 1건 | 20,000 | |
| 5)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신청 | 1건 | 50,000 | |
| 6)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 1건 | 20,000 | |
| 7)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등록신청 | 1건 | 30,000 | |
| 8)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 | 1건 | 10,000 | |
| 사. 자격시험 관련 | | | |
| 1)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교부신청 | 1건 | 5,000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제6조 |
| 2)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 1건 | 800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대통령령) |
| 3)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 1건 | 800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대통령령) |
| 아. 교통관계 | | | |
|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 신고 | 1대 | 1,400 | 화물자동차운수업법시행규칙 제48조, 제50조, 제52조 |
|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허가 신청 또는 임대허가 신청 | 1대 | 1,400 | |
| 자. 광역단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관련 | | | |
| 1) 비행선 이용 허가신청 | 1대 | 400,000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2 |
| 2) 비행기·선박 양측면 허가신청 | 1대 | 10,000 | |
| 3) 사업용 노선버스 양측면 허가신청 | 1대 | 2,000 | |
| 4) 열차·전동차 양 측면 신고신청 | 1량 | 2,000 | |
| 5) 비행선 이용 광고내용 변경허가 | 1대 | 200,000 | |
| 6) 비행기·선박 이용 광고내용 변경허가 | 1대 | 5,000 | |
| 7) 사업용 노선버스 이용 광고내용 변경허가 | 1대 | 1,000 | |
| 8) 열차·전동차 이용 광고내용 변경신고 | 1량 | 1,000 |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4조(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5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생략) 1.~4. (생략) | 제5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생략) 1.~4. (현행과 같음)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청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제2조 관련)

| 종류 | 금 액 | 비 고 |
|---|--------------|-----|
| 16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 1건당 100,000원 | |
| 16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 1건당 50,000원 | |
| 16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 1건당 30,000원 | |
| 16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 1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50,000원 | |
| 1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등록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0원 | |
| 1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건당 20,000원 | |
| 1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건당 10,000원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 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춘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